

○○○○주식회사

(현장)

현장 주소 및 전화번호

○○()현장 : -

시행일자 : . . .

수 신 :

참 조 :

제 목 : 현장 상용근로자(임시원) 고용승인 신청

현장 상용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예)

성명	직종	채용예정일자	월급여액	상여금/년%	채용사유	비고

(이상 명)

별첨 :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끝)

현 장 명 _____

현장소장 _____ (인)

○○○○주식회사
(현장)

현장주소 및 전화번호

○○() 현장 : -

시행일자 :

수 신 :

참 조 :

제 목 : 현장 상용근로자(임시원) 채용 보고

1. 현장 상용근로자(임시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였기 보고하오며

2. 아래 상용근로자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여))

성명	직종	채용예정일자	월급여액	상여금/년%	자택전화번호	비고

(이상 명)

- 첨 부 :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2부 (끝)

현 장 명 _____

현장소장 ----- (인)

근로계약서(상용)

○○○○주식회사 현장소장 (이하"갑"이라 칭함)과
근로자 (이하"을"이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계약기간) 본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개월로 하며 당사자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 2 조(취업장소) "을"의 취업장소는 _____현장 및 지점(사무소)로 한다.

제 3 조(취업직종) "을"의 직종은 직이다.
단, "갑"은 "을"의 직종을 쌍방합의 하에 변경할수 있다.

제 4 조(임 금) 1) "을"의 임금은 각종법정수당을 포함한 원으로 하며 동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시 급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차수당	월차수당	기 타	월급여액
1시간	192시간	68시간× 150%	20시간× 150%	32시간	8시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2) 지급방법 : 임금은 매월____일(익월____일)지급하며 소득세등 법에
정한 세금 및 제 공과금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제 5 조(근로시간) 1) "을"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 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2) 연장근로시간은 "갑"을 합의로 1일 2시간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며 합의에 의하여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휴일근로는 월2일(1일근로시간10시간)원칙으로한다.

단, 취식시간 1 시간과 오전 오후휴식시간 각 30 분을근로시간중
에 두되 이는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갑"의 현장사정에 따라 "을"은 기본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할 수 있다.

제 6 조(안전관리) "을"은 "갑"이 정한 안전에 관한 제 규칙과 안전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사고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다.

제 7 조(재해보상) 1)"을"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때에는 근로기준법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한다.

2)"을"의 고의나 과실 또는 업무외의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갑"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8 조(퇴직금) "갑"은 "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을 때에는 계속근로 1 년에 대하여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 9 조(해고사유) 1)"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을 해고할 수 있다.

①정기 또는 수시검진 결과 취업부적격자로 판정되었을 때

②"갑"의 취업사업장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③도박 또는 풍기문제로 직장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

④폭행,파괴,태업을 선동하는 등 불미한 행동을 했을 때

⑤취업기간중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⑥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할 때

⑦정당한 이유없이 월간 3일 이상 결근 했을 때

⑧"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 사업장에 취업한 때

제 10 조(손해배상) "을"은 "을"의 중대한 과실로 "갑"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을"과 "을"의 보증인이 연대하여 배상한다.

제 11 조(신원보증) 경리· 자재· 노무보조직에 한하여 보증기간3년 보증액1000만원에 해당하는 신원보증증권을 최초 고용시 및 갱신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 통을 작성,서명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19 . . .

"갑" ○ ○ ○ ○ 주 식 회 사

공 사 현 장

현 장 소 장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우수무인)
tel

현장 상용근로자 재직(경력)증명원 신청양식

근 무 지 확 인 서

성 명 : 한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직 종 :

재직(경력)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용도(제출처) :

위 사람은 당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있었슴)을 증명합니다.

현 장 명 _____

현장소장 _____ (인)

상용직 근로자 보수 조건표

1. 산출기준

- 1) 일 작업시간 : 10 시간
- 2) 월 근무일수 : 28 일 (격주 휴일근무 2일포함)

2. 산출내역

- 1) 기본근로 : 일 8 시간 × 월 22 일 = 176 시간 (평 일)
 일 4 시간 × 월 4 일 = 16 시간 (토요일)
- 2) 연장근로 : (일 2 시간 × 월 26일) × 1.5 = 78 시간 (월~토)
 (일 4 시간 × 월 4일) × 1.5 = 24 시간 (토요일)
- 3) 휴일근로 : (8시간× 1.5+2시간× 1.5)× 2일 = 30 시간
- 4) 주차수당 : 8시간× 4일 = 32 시간
- 5) 월차수당 : 8시간× 1일 = 8 시간

총 계 364 시간

취업규칙 (신고, 변경신고) 서			처 리 기 간	
			1 일	
① 사 업 장 명		②사업의 종류		
③ 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 근 로 자 수	계	명	여	명
⑥ 소 재 지	(전화 :)			
⑦ 의 건 청 취 일 또 는 동 의 일	년 월 일			
근로기준법 제9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신고,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1. 취업규칙(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제 1 장 총 칙

제 3 조(근로자의 정의) 이 규칙에서 근로자라 함은 제 2 장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회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중에서 면접에 합격된 자를 근로자로 채용한다.

1. 상용근로자로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된 날로부터 1년간 또는 공사준공시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상용근로자로 사용기간 중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
3. 일용근로자의 사용기간은 1일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채용된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면허,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3. 자필이력서
4. 건강진단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 1.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할 때(상용근로자)
- 2.본인 사망시
- 3.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제 8조(해고) 상용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수 있다.

- 1.근로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선의 가망이 없을 때
- 2.출근상황이 불량하여 3회이상 징계처분을 받거나 월 3 회이상 무단 결근한 때
-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 4.신체 또는 정신상병으로 직무를 감당할수 없다고 인정된 때
- 5.정기 또는 임시건강진단결과 취업부적격자로 판정된 때
- 6.현장의 공기단축 및 준공으로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 7.동절기로 인하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발주처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 8.기타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 9 조(상용근로자 해고의 예고)

- 1.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 2.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다음 각 호의 제 1 에 해당하는 자는 규정에 불구하고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할수 있다.
 - 1)3월 미만 근로자
 - 2)수습사용중인 자

제 10 조(퇴직금)

- 1.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 2.퇴직금지급은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고 1년을 초과하는 1년 미만의 단수는 월일 까지 합산 계산한다.

제 3 장 근로시간,휴식,휴일,휴가

제 11 조(근로시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은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____시간으로 총____시간이며 식사시간 1 시간 오전.오후 각 30분의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시업.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시업 : 상오 시 분 종업 : 하오 시 분

제 12 조(시간외 근로)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외에 근로를 시킬수 있다.

시간외 근로는 일주일에 시간을 한도로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제 13 조(휴일)

유급휴일은 전 주간 개근한 자에게만 유급으로 한다.

제 14 조(휴일대체)

업무상 지장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전 조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 15 조(출.퇴근) 근로자는 출.퇴근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업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에 관한 준비를하여 둘 것
2. 퇴근은 서류, 공구 등을 정리, 소정장소에 보관한 후에 행할 것

제 16 조(연월차 휴가) 상용근로자의 연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 및 제57조에 따른다.

제 17 조(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 상용근로자의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다.

제 4 장 복무상 의무

제 18 조(복무상 기본규칙)

근로자는 업무상 지시명령에 따라 자기업무에 전념하고 작업능률 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서로 협력하여 현장의 질서유지에 전력하여야 한다.

제 19 조(의무)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상 건강에 유의하고 명랑활발한 태도로서 근무한다.
2. 담당직무의 권한외의 행동을 하지말 것
3. 현장의 시설.기계.기구 기타 소모품을 아껴쓰며 원재료, 연료 기타 소모품을 절약하고 기계, 기구, 자재 등을 주의깊게 취급하여야 한다.
4. 작업을 방해하거나 현장내의 풍기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것
5. 화재나 도난방지에 유의할 것
6. 허가없이 다른 직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제 5 장 임 금

제 20 조 (임금)

임금은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구분하고 시급제로 한다.

제21조(임금마감일 및 지급일)

1. 임금은 매월 _____ 일에 기산하여 그달 _____일에 마감하고 다음달 _____일에 지급한다.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의 사망, 퇴직과 해고할 때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22 조 (임금지급방법)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계기하는 것은 임금지급시 공제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 2) 저축금
- 3) 각종보험료(고용, 의료, 국민연금 및 본인이 가입공제 의뢰한것)
- 4) 회사에서의 가불금
- 5) 물품 외상대금(본인이 공제의뢰한 것)

제 23 조 (법정수당)

소정기본근로시간외에 시간외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제 6 장 기타사항

제 24 조 (안전과 보건)

근로자는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직장의 정리정돈을 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특히 통로, 비상구 및 방화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물품을 놓지 말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안전표시판 등의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원동기, 동력장치 기타 기계설비의 시동 또는 정지조작을 담당자 또는 책임자 이외의 자는 행하지 말것.
5. 가스, 전기, 유해물, 폭발물 등의 취급은 소정방법에 의하여 신중히 행할 것.
6. 위험방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착용을 명한 보호구, 안전모, 작업복 기타의 사용 또는 착용을 태만히 하지 말 것.
7. 허가없이 건물이나 기중기 등의 위험한 장소에 올라가지 말 것.
8. 작업의 전후에는 사용장치, 기계기구의 점검을 하고 또 작업 중에는 소정 작업동작, 작업방법을 엄수할 것.
9.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서는 허가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10.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내버릴 것.
11. 현장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주사 등은 꼭 받을 것.

제 25 조 (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행한다.

제 26 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이 규칙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 부터 시행한다.

해 고 예 고 통 지 서(통지용)

고 용 일 자 :

직 종:

주민등록번호:

성 명:

귀하는 하기 사유로 인하여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로 고용해지 하여야 함을 근로기준법 제 27 조 2 항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해고사유 :

_____년 _____월 _____일
○ ○ ○ ○ 주 식 회 사
현 장
소 장 (인)

절-----취-----선-----

해 고 예 고 통 지 서(사업장보관용)

고 용 일 자 :

직 종:

주민등록번호:

성 명:

귀하는 하기 사유로 인하여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로 고용해지 하여야 함을 근로기준법 제 27 조 2 항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해고사유 :

_____년 _____월 _____일

수령자서명인: (인)

○ ○ ○ ○ 주 식 회 사
현 장 소 장

○ ○ ○ ○ 주 식 회 사

현장)

OO() 현장 : -

시행일자 : . . .

수 신 :

참 조 :

제 목 : 현장 상용근로자(임시원) 퇴직 보고

당 현장에 근무하던 상용근로자가 퇴직하였기에 보고하오니 건강보험자격 상실등 제반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예))

성명	직종	채용일자	사직일자	비고

(이상 명)

별첨 : 1. 사직서 사본 1부.
2. 건강보험 퇴직시 보수총액 신고서 1부.
3. 건강보험카드 1부.
4. 해고 예고 통보서 1부
5. 퇴직금 지급 명세서(지급시) 1부
6. 근로자 귀책사유에 대한 자인서(징계해고시) 1부 (끝)

현 장 명 _____

현장 소장 _____ (인)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사업장명		○○○○○(주)		근로자 성명		생년 월일		직급	
산정사유 발생년월일		채용년월일				근속기간		년 월 일	
임금지급 방법		고용형태				(해외) (국내)		(년 월 일) (년 월 일)	
산정내역									
임금계산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20 . . .부터 20 . . .까지		20 . . .부터 20 . . .까지		합계	
총일수		일		일		일		일	
임금내역	월급여액	원		원		원		원	
	상여금								원
	연월차수당								원
									원
	합계								원
평균임금		총임금액 원 ÷ (총일수) 일 = 원정							
퇴직금 원 × 30일 × / 365 =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 . . .

근로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사 용 자

인